

경영전문대학원학칙 시행세칙

개정일 : 2023.01.28

제정일 : 2006.09.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 학

제2조 (입학전형 시기) 석사과정 중 Global MBA과정의 입학전형은 매년 3월을 전후하여 시행하고, Corporate MBA, Finance MBA, Executive MBA과정의 입학전형은 매년 10월을 전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02.23, 2018.04.04., 2007.12.17>

제3조 (지원자격) ① Corporate MBA, Finance MBA, Executive MBA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1. 소정 기간의 직무경험 <개정 2018.04.04.>
2. 현재 재직자

② Global MBA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학업에 필요한 소정의 영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02.23, 2018.04.04.>

③ 계약학과 신입생은 위 1항을 충족하면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5.30.>

제4조 (전형방법) 석사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하되, 매 전형시마다 구체적인 전형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지원서류) 석사과정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전형료와 함께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및 수험표 (소정양식)
2. 대학(원) 졸업 및 성적증명서
3. 재직 및 경력증명서
4.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5. 추천서 (소정양식)
6. <삭제 2022.02.23>
7. 기타 필요서류

제6조 (합격자결정) 원장은 입학전형 기준에 의거 경영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사정한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최종 합격자를 확정 발표한다. <개정 2022.02.23>

제7조 (합격자 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제8조 (입학정원 외 입학) ① 외국인으로서 본원에 입학정원 외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과 본교 학칙 및 대학원 관련 규정에 제시된 자격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입학지원 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령 및 본교와의 협정 등에 의하여 입학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입학지원 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 및 학적

제9조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연세대학교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제10조 (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 납입 후 휴학 및 자퇴에 의한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교 규정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 반환은 산업체 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1조 (등록금대체) <삭제>

제11조의 2 (등록시기) Corporate MBA, Finance MBA, Global MBA, Executive MBA과정 학

생은 수업연한 중 지정된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23>

- 제12조 (휴학신청)** ① 미등록자는 등록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마친 자는 학기 2/3 경과 시점까지 휴학을 신청 할 수 있다.
- ② 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 후 1주일 이내에 입대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입대, 출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6.5.1.>
- ⑤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에 관한 사항은 산업체 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13조 (복학)** ① 휴학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입대휴학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대휴학 후 3년 이내에 전역증(소집해제통지서) 사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계약학과 학생의 복학에 관한 사항은 산업체 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4조 (재입학) <삭제 2018.04.04.>

제4장 수 입

- 제15조 (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필수과목, 선택과목, 리더십개발과목(Leadership Development Course)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3., 2018.04.04., 2015.10.07., 2010.02.22, 2009.10.01, 2008.10.01, 2007. 12. 17.>
1. Global MBA과정 <개정 2022.02.23, 2022.11.02>
 - 가. 총 45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39학점 이상 영어과목 이수)
 - 나. 삭제
 2. Corporate MBA, Finance MBA과정 <개정 2022.02.23, 2021.02.03>
 - 가. 총 45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영어과목 1.5학점 이상)
 - 나. 리더십개발과목 3학점 이상 6학점 이내
 3. Executive MBA과정 : 총 45학점 이상 <개정 2022.02.23>

4. 계약학과 : 총 45학점 이상, 단, 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이수요건을 변경할 수 있음 <신설 2019.12.27.>

② <삭제>

③ <삭제 2018.04.04.>

④ <삭제 2007. 12. 17>

⑤ <삭제 2007. 5. 17.>

⑥ 심화학습과정(Concentration)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정별로 지정된 선택과목 중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심화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청을 통해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23, 2018.04.04., 2008.10.01, 신설 2007. 12. 17>

⑦ Global MBA과정 입학생 중 입학 이전에 해외 대학에서의 수학 경력이 없는 자는 해외 대학에서 교환 또는 방문 학생 자격으로 수학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정 2022.02.23, 2018.04.04., 2015.10.7., 2014.5.30, 본항 신설 2010.02.22.>

⑧ 본원과의 협약에 의하여 본원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이수학점은 협약 또

는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 31조 제3항에서 이동 2018.04.04.>

제16조 (수강면제) ① 필수과목의 경우, 대학원 수강 실적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6학점까지 수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입학 전

본원에서 수강한 과목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되 수강면제 학점 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

② 수강을 면제 받은 경우, 면제 받은 학점만큼 다른 과목을 대체 수강하여야 한다.

제17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수강신청 기간에 등록과 관계없이 이수할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본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된다.

③ Global MBA과정의 수강신청 한도는 봄/가을 학기 각 15학점, 여름/겨울 학기 각 6학점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별도의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 <개정 2022.02.23, 2019.12.27.>

④ Corporate MBA, Finance MBA과정의 수강신청 한도는 봄/가을 학기 각 9학점, 여름/겨울 학기 각 3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Executive MBA과정의 수강신청

한도는 봄/가을학기 각 12학점, 여름/겨울학기 각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2.23, 2021.02.03., 2018.04.04.>

⑤ 본조 제3항과 제4항의 수강신청 한도에는 학칙 제29조의 학점인정에 따른 학점과 본 세칙 제21조의 교차수강에 따른 학점은 포함한다. 단, Corporate MBA, Finance MBA 교과목 중 단기형 리더십개발과목과 여름, 겨울학기 필수과목의 학점은 제외한다. <본항 신설 2018.04.04., 개정 2022.02.23, 2021.02.03>

제18조 (수강과목변경) 이미 신청된 수강과목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기 초 지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수강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이를 철회 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 후 잔여 수강과목은 최소한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 "W"로 기재된다.

제20조 (재수강) ① 성적평가가 "F"로 나온 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23>
②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에 학적부에는 재수강임을 밝히는 표시와 함께 재수강한 성적을 기재한다.
③ 재수강한 동일 과목의 이전 수강과목 이수 성적은 평량평균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21조 (교차수강) ① 각 과정 학생들은 필수과목 이외의 과목에 한하여 상호 교차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단, Executive MBA과정 및 계약학과 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필수과목은 소속 과정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제22조 (폐강)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 수가 7명 이하일 경우 해당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개정 2022.02.23>

제23조 (시험)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의 시기, 횟수, 방법은 강의담당 교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 (시험불응신고) 각종 시험에 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불응 사유와 시험불응

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병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다.
2. 입대 및 병무소집 관계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집영장 혹은 입대확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3. 직계가족 사망으로 불응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혹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25조 (추가시험) 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26조 (성적평가) 각 교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학업태도, 출석률, 보고서, 각종 시험 등으로 평가한다.

제27조 (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 환산하며, 학점은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 구 분 | 등 급 | 설 명 | 평 점 |
|------|----------------|-------|-----|
| 학업성적 | A ⁺ | 매우우수 | 4.3 |
| | A ⁰ | 우 수 | 4.3 |
| | A ⁻ | 약간우수 | 3.7 |
| | B ⁺ | 매우우량 | 3.3 |
| | B ⁰ | 우 량 | 3.0 |
| | B ⁻ | 약간우량 | 2.7 |
| | C ⁺ | 매우양호 | 2.3 |
| | C ⁰ | 양 호 | 2.0 |
| | C ⁻ | 약간양호 | 1.7 |
| | F | 불 량 | - |
| | W | 철 회 | - |
| | P | 합 격 | - |
| | NP | 불 합 격 | - |

② 성적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교수 재량에 맡기도록 한다.

제28조 (출석일수) 1학기 동안 실제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해당 과목의 성적을 부여한다. <개정 2018.04.04.>

제29조 (입대자의 성적인정) 중간시험 이후 입대휴학한 자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중간시험까지의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간주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30조 (학위수여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명시된 각 과정별 제시된 과목 및 학점 이수 <개정 2022.02.23,
2021.02.03>
 2. <삭제 2022.02.23>
 3. 각 과정별로 제시된 기간 동안 수학한 자
 4. 총 평량평균이 2.7 이상인 자
- ② 본원과의 협약에 의하여 본원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31조 (체험과목) <삭제 2018.04.04.>

제32조 (학위수여자 사정) 학위수여자는 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사정 한다.

제33조 (학위수여) 학위수여 사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경영학 석사학위(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를 수여한다.

제34조 (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연 2회로 하며, 대학 학사 일정에 따른다.

제35조 (학위기 양식) 학위기는 본교의 학위기 양식에 근거한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04.04.>

제6장 상 벌

제36조 (성적우수자 표창) <삭제 2018.04.04.>

제37조 (성적우수자 선정) <삭제 2018.04.04.>

제38조 (상벌위원회) ① 학칙 제31조 2호, 3호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상벌위원회

회를 통하여 이를 포상하거나 징계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본원 위원회로 갈음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9조 (포상발의) 학칙 제31조 2호 및 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 또는 원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1부.
2. 지도교수(부원장) 의견서 1부.

제40조 (징계발의) 학칙 제3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 또는 원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 진술서 1부.
3. 지도교수(부원장) 의견서 1부.

제41조 (징계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 (통보) ① 포상은 공개하며,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징계 사실을 지도교수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벌 내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7장 계약학과

제43조 (명칭) 계약학과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4조 (교육과정 편성 · 운영)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

다.

- ④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 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소속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⑤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본 계약학과 주임교수가 학생으로부터 학점 인정원을 제출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관련하여 추천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및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 ④ 그 밖에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6조 (학생정원) ①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본원에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7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납부금 및 산업체 등 부담금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이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 ②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총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 (학기 및 수업일수)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 연한에 따라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③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④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학위과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단, 해임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5.30.]

부 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시행세칙 제10조는 2006년 9월 1일부터, 제11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제31조 2항~4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 1항, 2항, 제16조 1항, 제31조 1항은 2007년 9월 입학자부터, 제15조 4항, 5항, 제16조 2항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시행세칙 제2조, 제5조, 제10조 2항, 제15조 1항, 3항, 4항, 6항, 제16조 1항, 제21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목, 1항, 2항, 제33조, 제36조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4항은 2007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1항, 3항은 2009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제11조의 2, 제15조 6항, 제17조 3항, 4항, 제27조 2항, 제31조 1항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30조 2항, 제31조 3항은 2007학년도 가을학기 복수학위과정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5)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시행세칙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는 200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30조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제31조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6)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의 ③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17조의 ③, ④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제31조 ①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 제11조의 2, 제15조 ③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15조 ⑦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9) (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3조 2항, 제10조 3항, 제12조 5항, 제13조 3항, 제14조 4항, 제21조 1항, 제7장)은 계약학과 관련 세칙으로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 제1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1)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시행세칙(제12조 제4항)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경과조치) 주간 석사과정 학생의 졸업 총이수학점 51학점 요건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소정시간의 봉사활동 및 어학능력 충족 요건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3)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항, 제6항에서 제8항, 제17조 제4항 및 제5항,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15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3항, 별표 1호)는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5)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별표 1호)는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05.25.>
- (16) (경과조치)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에 졸업하는 야간과정 졸업자에 대해서는 졸업요건 중 영어과목 6학점 이상 취득, 체험과목 3학점 이상 6학점 이내 취득 요건을 면제한다. <개정 2020.10.21.>
- (17)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 15조 제1항 제2호)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입학하여 졸업하지 아니한 재적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개정 2021.02.03.>
- (18) (경과조치)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2022년 2월에 졸업하는 야간과정 졸업자에 대해서는 졸업요건 중 영어과목 1.5학점 이상 취득, 리더십개발과목 3학점 이상 6학점 이내 취득 요건을 면제한다. <개정 2021.07.29>
- (19)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6조, 제11조의 2, 제15조 제1항, 제6항, 제7항, 제17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0조 제1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시행세칙(제 15조 제1항)은 202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2년 9월 1일자 입학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21)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시행세칙(별표 1호)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계약학과 현황 <개정 2020.05.25., 2023. 01. 28>

| 대학원 | 계약학과 명칭 | 정원 | 비고 |
|---------|--------------------------|--------|----|
| 경영전문대학원 | GBI MBA | 25명 내외 | - |
| 경영전문대학원 | Global Value Creator MBA | 20명 내외 | 폐과 |
| 경영전문대학원 | Advanced MBA | 60명 내외 | 신설 |